

항공기술교육원 장학 규정 시행세칙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항공기술교육원 장학 규정 시행세칙
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교육원 장학규정(이하 '규정'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장학금의 종류)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①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

1. 수시모집(1차) 장학금 : 수시모집(1차) 최종 합격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2. 수시모집(2차) 장학금 : 수시모집(2차) 최종 합격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3. 정시모집 성적우수 장학금 : 대학수학능력시험 4등급 이상인자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4. 복지 장학금 : 생활보호 대상자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②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

1. 학과 수석 장학금 : 학과 성적 최고우수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2. 성적우수 장학금 :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3. 복지 장학금 :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향학열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(직전학기 평점평균 3.00이상)
4. 형제 장학금 : 교육원에 형제, 자매가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두명 중 한명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하는 장학금 (직전학기 평점평균 3.00이상)
5.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: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직계 자녀 학생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
단, 해당 교직원이 정년퇴직 또는 사망 및 이에 준한 사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시 재학중인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되는 장학금 (직전학기 평점평균 2.00이상)

제3조 (자격) 장학금 지급대상은 교육원에 정규 등록한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.

제4조 (장학금액) 장학금액은 매 학기초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 (인원) 장학 종류별 장학생 인원은 매 학년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.

제6조 (지급보고) 원장은 장학금 지급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- 부 칙 -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